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22

발의연월일: 2020. 11. 13.

발 의 자:신원식・金炳旭・강대식

윤재갑・한기호・최춘식

이채익 • 김예지 • 조태용

윤주경·조수진·성일종

전주혜・이 용・윤한홍

유상범 • 안규백 • 홍준표

김병주 • 태영호 의원

(2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위성은 해외상업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의사결정권을 갖지만, 현행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어 획득방식에 따라 의사결정권의 주체가 바뀌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아울러 미국·러시아 등 해외 선진국은 안보 목적 우주활용의 경우에 국방부장관의 책임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군사목적 우주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가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국방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군사위성 개발·운용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법률 제 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 (생 략)
 -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생략)
 - (5) (6) (생략)
- 제21조(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 제21조(국가의 안전보장 주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의 안 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 ② (생략)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 ③ |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 정실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관급 공무원
 - 2. (현행과 같음)
 - ⑤·⑥ (현행과 같음)
-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가 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 발사업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② (현행과 같음)